2016년 사업시행자 산정 보상단가

2016. 5.

< 목 차 >

Ⅰ. 2016년 보상단가 결정 개요 ····· 1

Ⅱ. 이사비 ····· 2

Ⅲ. 분묘보상액 ····· 3

Ⅳ. 영농손실액 ····· 4

Ⅴ. 적용기준 ····· 5

※ 단가 증감내역 ····· 6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Ⅰ 2016년 보상단가 결정 개요

□ '16년 보상단가 결정 목적

○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손실보상액 산정 시 공통 적용할 보상단가를 결정하여 '16년도 보상대상에 적용

□ 사업시행자 보상단가 산정

○ 손실보상액 산정은 보상 대상에 따라 감정평가에 의해 산정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정

<보상액 산정방법>

보상액 산정방법	보상대상	법률규정
감정평가 의뢰	- 토지 및 건축물 등 물건 - 어업권 등 권리 - 농업손실을 제외한 영업보상	토지보상법 제68조제1항
사업시행자 직접 산정	**- 주거이전비 - 이사비 - 분묘보상액 - 영농손실액**	**토지보상법 제68조제1항 단서**

○ 주거이전비 산정방식 변경

2015년 이전(~2014년)	2015년 이후
직전 년도 분기별 통계자료의 평균치를 활용하여, 매년 초 연 1회 산정	주거이전비 산정일 기준 가장 최근 분기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산정 * 한국감정원 홈페이지(www.kab.co.kr)에서 제공하는 정보 활용

Ⅱ 이사비

□ 산정기준(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별표4)

주택연면적기준	이사비 산정기준		
	노임*	차량운임**	포장비
33㎡미만	3명분	1대분	(노임+차량운임)x0.15
33㎡이상~49.5㎡미만	4명분	2대분	(노임+차량운임)x0.15
49.5㎡이상~66㎡미만	5명분	2.5대분	(노임+차량운임)x0.15
66㎡이상~99㎡미만	6명분	3대분	(노임+차량운임)x0.15
99㎡이상	8명분	4대분	(노임+차량운임)x0.15

* (**노임**) 통계작성기관이 작성·공표한 공사부문 보통인부 노임 기준
☞ 대한건설협회 '16년 상반기 공사부문 보통인부 노임단가 적용 : **94,338원**

** (**차량운임**) 최대적재량이 5톤 화물자동차의 1일 8시간 운임기준
☞ 한국교통연구원 2015년도 이사화물운송주선업체 발표 : **286,000원**

□ 산출내역

(단위 : 원)

주택연면적	이사비			
	적용금액	노임	차량운임	포장비
33㎡미만	**654,360**	283,014	286,000	85,352
33㎡이상~49.5㎡미만	**1,091,750**	377,352	572,000	142,402
49.5㎡이상~66㎡미만	**1,364,690**	471,690	715,000	178,003
66㎡이상~99㎡미만	**1,637,630**	566,028	858,000	213,604
99㎡이상	**2,183,500**	754,704	1,144,000	284,805

※ 한 주택에서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주택연면적기준은 세대별 점유면적에 따라 각 세대별로 계산·적용

Ⅲ 분묘보상액

□ 산정기준(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2조)

유연분묘 보상액	무연분묘 보상액
분묘이전비*, 잡비**, 이전보조비***의 합계액	유연분묘 이전비 및 잡비의 50% 이하

* (**분묘이전비**) 4분판 1매, 마포 2필 및 전지 5권의 가격, 제례비, 노임 5인분 (합장인 경우 사체 1구당 각각의 비용의 50% 가산) 및 운구차량비

※ 석물(비석, 상석 등) 이전비는 감정평가를 통하여 산정

** (**잡비**) 분묘이전비 산정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이전보조비**) 100만원

□ 산출내역

(단위 : 원)

구분		합계	분묘이전비①		잡비 (①×30%)	이전보조비
			분판·마포·전지·제례비·노임	운구 차량비		
유연	단장	3,354,300	1,399,500	411,500	543,300	1,000,000
	합장	4,263,970	2,099,250	411,500	753,225	1,000,000
	삼합장	4,991,710	2,659,050	411,500	921,165	1,000,000
	사합장	5,537,520	3,078,900	411,500	1,047,120	1,000,000
	오합장	5,901,390	3,358,800	411,500	1,131,090	1,000,000
	육합장	6,083,320	3,498,750	411,500	1,173,075	1,000,000
	아장	2,262,690	559,800	411,500	291,390	1,000,000
무연	단장	1,032,720	699,750	94,650	238,320	-
	합장	1,487,550	1,049,625	94,650	343,283	-
	아장	486,910	279,900	94,650	112,365	-

Ⅳ 영농손실액

□ 산정기준(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대구는 경북, 부산·울산은 경남의 통계 적용)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

*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수입 = 농작물수입 ÷ 표본농가 경지면적

□ 산출내역

○ '15년 단위면적당 농작물수입

(단위 : 원, ㎡)

구분	'15년 농작물수입(A)	'15년 표본농가 경지면적(B)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수입(C=A÷B)
경남	23,486,000	11,156	**2,105.23**
경북	24,746,000	12,428	**1,991.15**

○ 영농손실 보상단가

(단위 : 원)

구분	단위면적당 농작물수입			2016년 영농손실 보상단가
	2013년	2014년	2015년	
경남	2,124.38	2,001.08	2,105.23	**4,154**
경북	2,042.60	2,087.67	1,991.15	**4,081**

Ⅴ 적용기준

○ 우리 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보상업무에 적용하되, 적용시기는 **2016년도 보상단가 결정일로부터 2017년도 보상단가 결정 시**까지 적용

참고 공통적용 보상단가 증감 내역

○ 이사비

(단위: 원)

구분	33㎡미만	33㎡이상 ~49.5㎡미만	49.5㎡이상 ~66㎡미만	66㎡이상 ~99㎡미만	99㎡이상	비고
'14년도	707,820	1,222,060	1,527,570	1,833,090	2,444,120	
'15년도	720,370	1,238,800	1,548,500	1,858,200	2,477,600	
'16년도	654,360	1,091,750	1,364,690	1,637,630	2,183,500	
증감	△66,010	△147,050	△183,810	△220,570	△294,100	

○ 분묘보상액

(단위: 원)

구분	유연단장	유연합장	무연단장	무연합장	비고
'14년도	3,236,000	4,094,000	978,250	1,407,250	
'15년도	3,279,870	4,159,810	1,000,180	1,440,150	
'16년도	3,354,300	4,263,970	1,032,720	1,487,550	
증감	74,430	104,160	32,540	47,400	

○ 영농손실 보상액

(단위: 원)

구분	'14년도	'15년도	'16년도	증감
경남	4,248	4,166	4,154	△12
경북	4,085	4,115	4,081	△34